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2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고신관(기소), 이가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도근(국선)
판 결 선 고 2024. 9. 2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ZD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1. 28. 19:4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B 앞 교차로를 왜관 3번도로 쪽에서 C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PD125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에 대하여) - 캡처사진, 영상 CD,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부근 사설 CCTV 카메라 영상 확인에 대하여), 캡처사진, 영상 CD,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방법용 CCTV카메라 영상 첨부), 캡처사진, 영상 CD, 진료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현 상태 및 합의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아직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태안 _____